

1 경영진·감사기구의 책임성 강화 (←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규정화)

- 「내부회계관리제도(이하, 내부회계) 평가·보고 기준」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에서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으로 규정화('24년 시행, '24사업연도에 한해 유예 가능)

⇒ 경영진·감사기구는 「내부회계 평가·보고 기준」에 따라 내부회계를 충실히 평가 및 보고하여 향후 외감법 위반사항*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*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규정된 내부회계 운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동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가능

2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 평가보고 의무

- '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회사 중 일부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 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을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음

⇒ 경영진·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의 논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며,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

◆ (참고) 경영진·감사기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·보고

- (대표자) 내부회계가 효과적으로 설계·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, 평가결과와 (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) 시정계획을 '운영실태보고서'에 포함하여 주주총회·이사회·감사기구에 보고
 - 내부회계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, 감사(위원회) 및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내용 등을 고려 (§「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」 문단 24~25, 「내부회계 평가보고 가이드라인」 문단 60)
- (감사(위원회))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를 평가하고, 평가결과와 시정계획 검토 결과를 '평가보고서'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
 -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된 자료,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평가 자료 등을 고려 (§「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」 문단 27~28)

③ 재무제표 작성 통제, 부정위험 예방·적발 통제 등에 유의

- '23년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종속·관계기업 등 평가, 재무제표 수정 등 재무제표 작성 통제에서 발생하였으며, 기타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예방·적발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 미비 등이 지적됨

⇒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통제와 부정위험을 예방·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* 등을 충실하게 구축·운영할 필요

* <참고> 보도자료 2024.5.24. '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'

'23년 ICFR 부적정 17사의 중요한 취약점¹⁾ (단위 : %)

구분	비중	
• 내부통제 환경구축 미흡	9.8	
- 부정 예방·적발 통제 (자금, 법인인감 관리 통제 등)	5.9	
- 통제환경 및 내부감시기구 미비	2.0	
- IT 일반 통제 (ITGC)	2.0	
• 재무제표 작성 통제 미흡	90.2	
- 회계정보 전반통제 ²⁾	19.6	
- 특정 분야 회계처리	평가 및 회수가능성	37.3
	- 종속·관계기업	19.6
	- 금융상품	11.8
	- 현금창출단위 및 유·무형자산	5.9
	기타	33.3
	- 재고자산	9.8
	- 수익	7.8
- 기타	15.7	
합 계	100.0	

* 1) 중요한 취약점이 다수이면 중복 계산

2) 전기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한 중요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

◆ (참고) '23년 유의한 미비점 분석*

* 유의한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기구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 미비점의 결합으로,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10개 회계법인 대상으로 파악

- 유의한 미비점도 재무제표 작성 통제 미비가 큰 비중(54.6%)을 차지

- 그 외 자금 통제(8.2%), 회사 내부 생성 정보(IPE) 관련 통제(6.2%), IT 일반통제(5.2%) 미비 등 순